(사업방법서 별지)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

**1. 보험의 종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종합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
단, 판매채널에 따라 보험종목의 명칭 중 " 비즈앤안전 파트너(2601.8)"
부분의 명칭을 가입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할 수 있음

나. 기타
회사는 보험종목의 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해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

**3. 보험의 목적**

가.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상실이익
라. 비용손해
마.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br>기간</th><th>보험료<br>납입기간</th><th>가입<br>나이</th><th>보험료<br>납입주기</th></tr>
<tr><td rowspan="2">기본<br>계약</td><td>·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br>·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td><td rowspan="2">3 년만기<br>5 년만기<br>10 년만기</td><td rowspan="2">전기납</td><td>제한없음</td><td rowspan="2">월납<br>3 개월납<br>6 개월납<br>연납</td></tr>
<tr><td>· 상해 사망</td><td>만 15 세<br>~80 세</td></tr>
</table>

| | | | | |
|---|---|---|---|---|
| 선택<br>계약 | ·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br>(15 일면책) 특별약관<br>· 구내폭발 · 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전기위험(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br>(영위업종적용) (15 일면책) 특별약관<br>· 점포휴업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점포휴업(화재) 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br>·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 일당(1 일이상)<br>(풍수재 15 일면책) 특별약관<br>·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br>· 도난손해(주택물건) 특별약관<br>· 도난손해(일반물건) 특별약관<br>·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br>·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br>·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특별약관<br>· 음식물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음식물 배상책임Ⅱ 특별약관<br>·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br>· 가스사고 배상책임Ⅱ 특별약관<br>·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br>·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약국시설 배상책임 특별약관<br>·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이 · 미용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br>·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Ⅱ 특별약관<br>·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br>·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br>·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Ⅱ 특별약관<br>· 실내 트램펄린 · 에어바운스 대인배상책임Ⅱ<br>추가특별약관 | 3 년만기<br>5 년만기<br>10 년만기 | 전기납 | 제한없음 | 월납<br>3 개월납<br>6 개월납<br>연납 |

| 구 분 | |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 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 선택 계약 | ·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br>·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br>·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 특별약관<br>·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특별약관 | 3 년만기<br>5 년만기<br>10 년만기 | 전기납 | 제한없음 | 월납<br>3 개월납<br>6 개월납<br>연납 |
| | ·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Ⅱ 특별약관<br>·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Ⅱ 추가특별약관<br>·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Ⅱ 특별약관<br>· 재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3 년만기<br>5 년만기 | 전기납 | 제한없음 | 월납<br>3 개월납<br>6 개월납<br>연납 |
| | · 상해 후유장해(80%이상) 특별약관<br>· 상해 후유장해(3~100%) 특별약관<br>· 상해 입원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br>·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br>·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br>·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br>· 상해 입원 · 통원 수술비 특별약관<br>·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비운전자용) 특별약관<br>·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특별약관<br>· 골절 진단비(치아파절(깨짐,부러짐)제외) 특별약관<br>· 5 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br>· 5 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br>· 상해 척추손상 수술비 특별약관<br>·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별약관<br>·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특별약관<br>· 상해 관절(무릎 · 고관절)손상 수술비 특별약관<br>·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 3 년만기<br>5 년만기<br>10 년만기 | 전기납 | 만 15 세<br>~<br>80 세 | 월납<br>3 개월납<br>6 개월납<br>연납 |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보험<br>기간</th><th>보험료<br>납입기간</th><th>가입<br>나이</th><th>보험료<br>납입주기</th></tr>
<tr><td rowspan="5">선택<br>계약</td><td>· 상 · 하지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td><td rowspan="5">3 년만기<br>5 년만기<br>10 년만기</td><td rowspan="5">전기납</td><td>16 세<br>~<br>80 세</td><td rowspan="5"></td></tr>
<tr><td>·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br>(운전자용) 특별약관<br>·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br>·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td><td>만 18 세<br>~<br>80 세</td></tr>
<tr><td>·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td><td>만 19 세<br>~</td></tr>
<tr><td>·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br>·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br>·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td><td>만 20 세<br>~</td></tr>
<tr><td>·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br>·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br>·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특별약관<br>·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누수사고제외) 특별약관<br>·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 특별약관<br>·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화재(폭발포함) 배상제외)(누수사고제외) 특별약관<br>· 6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br>· 12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td><td>만 15 세<br>~</td></tr>
</table>

주 1)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관련 보통약관,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 일면책) 특별약관,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구내폭발 · 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및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가입 시 가입시점에 실손보상형과 비례보상형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함.

주 2)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및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Ⅱ,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Ⅱ 추가,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Ⅱ, 재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은 기본계약 보험기간이 10 년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함

##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명 이상이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납입일을 단일로 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수에 따라 아래의 할인율을 보험료에 곱한 금액을 할인함

| 5명 이상 | 10명 이상 |
|---|---|
| 보장보험료의 1.0% | 보장보험료의 2.0% |

## 8.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별약관 및 갱신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9. 보험료 운영에 관한 사항

적립보험료의 운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율은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하며, 적립보험료는 적용하지 않음

##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당월분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기간 이내의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선납이 가능함

나.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1) 보장보험료 :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보험료 납입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함

2) 적립보험료 : 할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 해당일까지 공시이율로 부리함

## 12. 추가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중도인출금은 인출시점에서 차감되며,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함)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음.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한도에서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14.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함

##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적립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V(이하「공시이율」이라 함)로 함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함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함

| 공시기준이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α) + 운용자산이익률×(1-α) |
|---|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다만, 계정별 자산규모가 작아 구분 산출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정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음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중치(α) = (A/B+C)/(A+C)<br>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α) = 1 - (A/B+C)/(A+C)<br>-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br>-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r>- C :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 |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함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보험료 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바) 「보험료 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함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br>=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br>+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br>+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br>+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

(나) 외부지표금리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함

(라)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함

| 국고채 가중치(β1) = a/(a+b+c+d)<br>회사채 가중치(β2) = b/(a+b+c+d)<br>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a+b+c+d)<br>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a+b+c+d)<br><br>- a:보험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br>- b:보험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br>- c:보험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br>- d:보험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잔고(월평잔의 평균)<br>-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br>-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함 |
|---|

3)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 투자지출률 |
|---|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함

| 운용자산수익률(%)<br>= 투자수익(B)/[평균자산(A) - {투자수익(B)-투자비용(C)}/2]×100<br><br>투자지출률(%)<br>= 투자비용(C)/[평균자산(A) - {투자수익(B)-투자비용(C)}/2]×100<br><br>· A(평균자산) : {직전 12 개월말자산 + ∑(해당월전월까지 월말자산×2) + 해당월말자산} / 24<br>· B(투자수익) : 직전 12 개월간 투자수익, C(투자비용) : 직전 12 개월간 투자비용 |
|---|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함

4)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손익 전체를 인식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함

라.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함

마.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로 함

바.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장기보험 공시이율 운용지침"을 따름

## 16. 만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지급 대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 라.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까지 유지된 계약

나. 지급 방식

회사는 다.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라.에서 정한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가.에서 정한 지급 대상 계약의 만기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함

다. 만기유지보너스 금액

보험기간 중 납입한 영업보험료 합계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영업보험료 합계액은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에 따른 보험료 할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할인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라. 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계약 만기시점의 계약해당일)을 말함

## 17.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가. 특정보장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적용되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해사망", "화재손해" 및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받지 않고, 해당 보장에서 정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이 경우, "상해사망", "화재손해" 및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보장의 부담보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화재손해"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보장의 부담보는 동시에 할 수 없음

나. 종업원에 대한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부담보 제도성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에 부가함. 이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계약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보장에 할인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의 화재(폭발포함)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 18.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1) 내지 3) 이외의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

## 19.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지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단체보험 계약(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한 계약 포함)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대하여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지정 특별약관을 적용함

나.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지정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확인서([별첨 3] 및 [별첨 4] 참조)를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함

다.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지정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사실 및 기업 단체보험의 근로자 사망보험금 관련 판례의 주요내용([별첨 5] 참고)을 보험가입시 안내함

## 20. 기타사항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가입하는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 제 1 회 보험료(특별약관 보험료 포함)의 1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함

(2)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3)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Ⅱ 추가특별약관은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4)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Ⅱ 특별약관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함

(5)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6 개업종(양로원, 보육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6)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 약관(특수건물)에 가입 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보장에 할인한 보험요율을 적용함

(7)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 시 종업원에 대한 재난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에 가입 가능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난배상책임 보장에 할인한 보험요율을 적용함

(8)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중 1 가지 이상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9)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및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은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Ⅱ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함

(10)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가입시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정원 10 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1) 실내 트램펄린 · 에어바운스 대인배상책임Ⅱ 추가특별약관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의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업종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12)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아래 특별약관은 모두 실손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함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관련 보통약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 일면책) 특별약관
·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폭발 · 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13) 비례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아래 특별약관은 모두 비례보상형으로만 가입 가능함

· 화재손해(영위업종적용)관련 보통약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 일면책) 특별약관
·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폭발 · 파열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14) (12)에서 실손보상형을 선택한 경우 보험의 목적에 따라 아래에 정한 가입금액 이하로 가입이 가능함

| 보험의 목적 | 건물, 기계, 시설, 집기비품 | 동산 |
|---|---|---|
| 일반물건 | 총 가입금액 20 억원 | 2 억원 |
| 공장물건 | 총 가입금액 20 억원 | 2 억원 |

(15)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단,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판정 시점은 해당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가입시점으로 함.

(16)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 1명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으로 운영하며, 해당 보험의 목적 건물급수, 관리상태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17)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화재손해부담보 특별약관과 동시 가입이 불가능함

| |
|---|
|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별약관 |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15일면책) 특별약관 |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
|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
| ·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 ·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 ·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주택물건) 특별약관 |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 10%)(일반물건) 특별약관 |

(18)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 및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해야 함

(19)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부동산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함

| |
|---|
|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특별약관 |

(20)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과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부담보 특별약관은 화재손해와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을 보통약관으로 운영하는 장기종합보험에 한하여 운영 가능하며 동시가입이 불가능함

(21)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추가하여 가입 가능함

(22) 소화설비할인 특별약관은 일반, 공장물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23)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은「영업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 |
|---|
| ·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 |
| ·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

(24)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은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25) 피보험자가「비운전자」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함

| |
|---|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br>· 운전면허정지일당 특별약관<br>· 운전면허취소보장 특별약관 |

(26)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은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

(27) 다수의 피보험자를 추가하여 가입 가능함.

(28) 회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다중이용업)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1) ‘화재배상책임(기본계약)’만을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배상책임 이외의 다른 보장은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2)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
3) 계약자의 선택으로 화재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을 추가할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
4) 장기손해보험상품으로 가입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등 중요내용을 비교

[별첨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
[별첨 2] 다중이용업 계약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 확인서

(29) 피보험자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다중이용업)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인 경우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 가입이 불가능함

| |
|---|
| ·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br>·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br>·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별약관 |

(30)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Ⅱ, 노인요양시설종업원신체피해배상책임Ⅱ 추가, 노인요양시설전문인배상책임Ⅱ 특별약관은 동일한 공제금액으로 가입해야 함

(3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가입시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은 가입이 불가능함

(32) 아래에 정한 특별약관의 경우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 | 동시가입불가 특별약관 |
|---|---|
| 1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관련 보통약관<br>·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 2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
| 3 |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 |
| 4 | · 음식물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음식물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 5 | · 점포휴업손해(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br>· 점포휴업(화재) 일당(1 일이상) 특별약관<br>·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 일당(1 일이상)(풍수재 15 일면책) 특별약관 |
| 6 |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 7 | ·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br>·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 8 |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br>·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 9 |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Ⅲ 특별약관<br>·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Ⅲ 특별약관<br>·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Ⅲ(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특별약관<br>·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Ⅲ<br>(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누수사고제외) 특별약관 |
| 10 | · 12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br>· 6 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
| 11 | · 비특수건물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15 일면책) 특별약관<br>·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영위업종적용)<br>(15 일면책) 특별약관 |
| 12 |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br>· 재난배상책임 특별약관 |

(33) 이 상품은 독립특별약관을 추가로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첨 1】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다중이용업)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는 아래의 금액을 보상한도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보상한도[주)] | 보상금액[주)] |
|---|---|---|
| 사 망 | 피해자 1 명당 1 억 5 천만원 |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부 상 | 피해자 1 명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부상 등급별 한도금액 |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후유장애 | 피해자 1 명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에서 정한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금액 |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타인의 재산손해 | 사고 1 건당 10 억원 |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의 2 에 의함

(2)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 보장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다른 위험보장(자기의 재산손실, 화재사고가 아닌 영업과 관련된 다른 배상책임 등)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보장 가입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3)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한 화재배상책임(기본계약)에 대하여 아래 사유 이외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 조의 6 에 의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7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 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해당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함.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 조(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상법」 제 650 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 1 항 · 제 2 항, 제 651 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 652 조(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제 1 항 또는 제 654 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화재배상책임보장만을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상품과 장기손해보험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비교설명 받고 확인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 확인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과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일반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 |
|---|---|---|---|
| 보험기간 | | 3년이하(통상 1년) | 3년이상 가능 |
| 보장 내용 | 의무가입 | 화재배상책임 | 화재배상책임 |
| | 선택가입 (추가보험료 발생) | 임차자특약 | 화재손해 시설배상책임, 임차자특약 등 |
| 만기환급금 | | 없음 | 회사가 운영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으나 추가보험료가 발생 |
| 보험료주) | | | |

주) 가입하려는 다중이용업주의 해당 업종 및 가입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할 보험료 기재

(1)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배상책임 이외의 다른 보장은 계약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2)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이 아닌 **일반손해보험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3) **계약자의 선택으로 화재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을 추가할 경우**에는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4) **장기손해보험상품을 선택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상품과의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료 등 중요내용**에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비교.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5)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설계서를 통해 **해당 상품의 보험료**에 대해 **설명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

※ 정확한 보험료 내역과 보장내용 등 기타 사항은 보험안내자료, 가입설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에 대한 다중이용업 계약자의 확인

본인(계약자)_____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안내사항에 대하여 모집인 _____로부터 상기와 같이 충분히 비교설명을 듣고 동 계약을 청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
|---|---|
| 계약자 | 서명(날인) |
| 보험모집인 | 서명(날인) |
| 법정대리인 | 서명(날인) |
| 법정대리인 | 서명(날인) |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 | |
|---|---|
|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 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 서 명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3】

# 업무상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회사제출용]

법정상속인 (　　)은 아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보험계약 내용 및 업무상 사망 원인]

| 상품명 및 계약일자 | | | |
|---|---|---|---|
| 보험계약자 | | 피보험자 | |
|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 |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
| 업무상 사망 원인<br><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br><br>※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업무수행 중의 사고(제 27 조)<br>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제 28 조)<br>행사 중의 사고(제 30 조)<br>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제 31 조)<br>요양 중의 사고(제 32 조)<br>제 3 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 33 조)<br>업무상 질병(제 34 조)<br>출퇴근 중의 사고(제 35 조)<br>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제 36 조) | | □<br>□<br>□<br>□<br>□<br>□<br>□<br>□<br>□ |
| 지급보험금(예상) | 원 | |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재해는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고(故)　　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명을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오니 해당보험금을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인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인]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별첨 4】

# 업무외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회사제출용]

법정상속인 (　　)은 아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보험계약 내용 및 업무외 사망 원인]

| | | | |
|---|---|---|---|
| 상품명 및 계약일자 | | | |
| 보험계약자 | | 피보험자 | |
|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자 |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
| 업무외 사망 원인<br><br>※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사고원인을 기재 바랍니다) | | |
| 지급보험금(예상) | 원 | |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재해는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고(故)　　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서명을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법정상속인]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별첨 5】

#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지정 특별약관 주요내용 확인서

[회사제출용]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수익자 결정 및 사망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보험계약자 자필기재)으로 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 다 70285

◆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보험사제출용) 등 업무상의 재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은 되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외 사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망' 및 '업무외 사망'의 구분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업무상 사망'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확인서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업무외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리고 계약자를 통하여 "업무외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재해는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계약자명 :　　(인/서명)

## 【별첨 6】 부가가능 독립특별약관

| 구분 | 특별약관 |
|---|---|
| 제도성 |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 | ·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 |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 | · 단체취급 특별약관 |
|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Ⅱ 특별약관 |
| | · 복합구조건물요율적용(공장물건) 특별약관 |
| | · 소화설비 할인 특별약관 |
| | ·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지정특별약관 |